



제418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자시스템을 통한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 마련〉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26호)

2024. 9.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기 · 이기현 · 조 국 · 모경종 · 윤건영 · 민병덕
박상혁 · 윤종균 · 정동영 · 박 정 · 이개호 · 한준호
임미애 · 정성호 · 황운하 의원(15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 의안번호 : 34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에 입력한 상태 등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출 요구가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 요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서류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규정에 전

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구 및 제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안전 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나 사진·영상물(이하 “자료”라 함¹⁾)의 제출 요구 및 제출과 관련하여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6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제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요구할 수 있고 그 전자시스템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국회법」 제128조 2)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3)에서

- 1)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128조제1항은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와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을 “서류등”으로 약칭하고 있음.
- 2)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언감정법」”이라 함) 제5조4)에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회와 행정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자료 요구 및 제출 현황을 보면, 국회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⁵⁾을 통해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행정기관도 동 시스템을 통해 답변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자료를 유통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제출받을 때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⁶⁾, 전자적인 방식을 활용한 자료 요구·제출을 활성화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4) 「증언감정법」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이 법에 따른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⑤ 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⑥ 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은 법률안심사, 국정감사·조사 등의 업무수행 시 국회와 정부부처·유관기관 간 온라인으로 전자적인 자료유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임.

6) 국회 관계법률에 따른 의정활동과 관련한 전자시스템에는 원격영상회의시스템(「국회법」 제73조의2제6

하고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제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자료제출 요구서의 전자적 발송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증언감정법」 제5조는 자료제출 요구서는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요구서의 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⁷⁾하도록 하고 있음. 「민사소송법」은 송달에 관하여 도달주의 원리에 따라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교부송달’⁸⁾을 원칙으로 하되, 교부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⁹⁾을 실시하고, 보충

항), 전자청원시스템(「국회법」 제123조의2), 국정감사정보시스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등이 있음.

「국회법」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

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를 공개·관리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7) 요구서의 송달방법은 「증언감정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민소§174~197)을 준용한다.(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7., p802)

8) 「민사소송법」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분을 교부하여야 한다.

9)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송달 및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송달’¹⁰⁾을 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관계 법률의 규정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제출 요구서를 전자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증언감정법」상의 송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분명히 하면서 관계 법률의 해석·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등에
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¹¹⁾이나 「행정심판법」(제54
조)¹²⁾ 등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요구서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 10)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1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2) 「행정심판법」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참가를 한 자에게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결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전자적 송달의 적용범위·요건, 효력 발생 시점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와 같이 전자적 송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려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전자시스템의 활용 근거는 「국회법」 보다는 자료 요구 및 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증언감정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¹³⁾.

문 의 처

02)6788-5014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하는 재결서 등 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청구인이 제2항에 따라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전자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 (재결서 외의 서류는 7일이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13)참고로,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대표발의, 2203104)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임.